

## 주방용 오물분쇄기란?



「하수도법」 제33조 및 환경부 고시(제2013-179호)에 근거하여 일반가정 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토록 하는 제품입니다.

### 제품구매 시 확인할 사항

Step 01	구매코자 하는 제품이 관련인증을 취득한 제품인지 여부를 '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·관리 시스템'( <a href="http://www.gdis.or.kr">http://www.gdis.or.kr</a> )에서 확인하세요.
------------	--



**Step 02** 구매하려는 인증제품의 외형과 내부가  
인증받을 당시와 동일한지 확인하세요.  
**불법  
개·변조  
여부 확인** 회수통이 없거나, 회수통에 거름망(여과망)이  
제거 또는 미설치되어 음식물찌꺼기가  
전량 또는 20% 이상 하수도로 배출되는  
제품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
# 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법!



## 01 음식물 쓰레기만 넣기

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 아니한  
제작기를 넣을 경우 분쇄기 파손  
및 기능저하 등 제품사용에 문제가  
발생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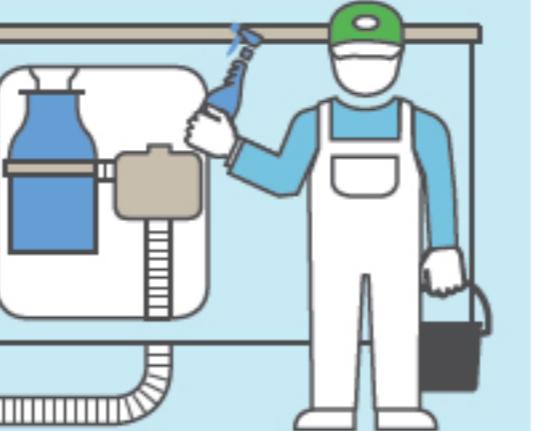
## 02 제품 작동매뉴얼 확인

제조사마다 다양한 작동원리 및 방법으로 설계·제작되므로 해당 기업에서 제공하는 제품 작동매뉴얼을 숙지하시어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



### 03 주기적인 옥내배수설비 청소 · 관리

도 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 
과정의 옥내배수설비는 배출되는  
음식물 찌꺼기로 인해 배관 막힘,  
착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
도기적인 옥내배수 설비의 청소와  
관리가 필요합니다.



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 법령 소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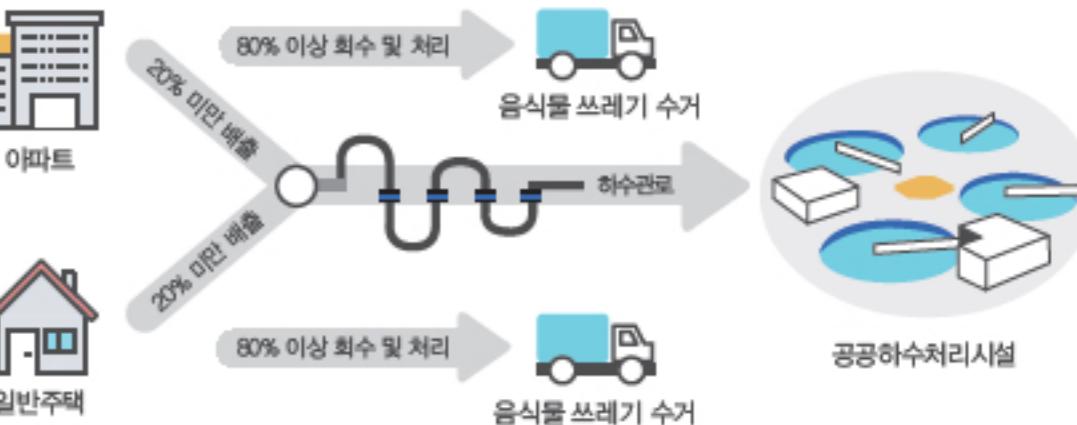
## 「하수도법」 및 관련규정

하수도법」 제3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「특정공산품」으로  
분류되어 「제조 · 수입 · 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
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」(환경부 고시 제2013-179호) 제2조에 근거한 「주방용  
오물분쇄기 인증」 및 「전기용품안전관리법」 제3조에 근거한 안전인증(KC)을 의무 취득할 경우  
일반가정에서 판매 ·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



판매 · 사용 가능 지역

01



## 02

#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(오수처리시설만 해당)이 설치된 일반 가정

